

과목명: 보험론



담당교수: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정호일

주교재: 보험과 리스크 관리

제9장 재산보험

목차

- 1절 재산보험의 개요
- 2절 화재보험
- 3절 간접손실보험
- 4절 해상보험
- 5절 기타 재산보험
- 6절 보험료 산정

학습목표



1. 재산보험의 의의를 알아본다.

2. 재산보험의 주요 상품 종류를 알아본다.

3. 각 상품 계약의 담보손인, 보상한도 및 보상방법을 알아본다.

4. 손해보험 보험요율 산정의 의의와 산정방식을 알아본다.

제1절 재산보험의 개요

1. 재산보험의 의의

➤ 재산(property)

- 소유권
- “타인의 간섭없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동물이나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” - 민법 제99조 제1항
 - 부동산:토지와 그 정착물(토지, 건물, 건물의 내용물, 토지 위에서 자라는 모든 것)
 - 동산:법적으로 모양이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산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)

➤ 재산보험(property insurance)

-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분실, 손상 혹은 파괴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멸되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

2. 재산보험의 특징 및 종류

- 재산보험에서 담보하는 리스크
 -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재산의 분실 또는 손상에 다른 직접손실 및 간접손실의 리스크
 - 직접손실 리스크 - 화재나 기타 손실원인에 의하여 건물 및 동산이 물리적으로 분실 또는 손상될 리스크
 - 간접손실 리스크 - 손실이 발생했을 때, 그 손실의 결과로 또 다른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
- 보험목적물
 - 재산보험에서 담보하는 재산(동산과 부동산)
- 피보험이익
 -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-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는 손실발생 시점에서 입증
- 손인(peril)
 - 손실발생의 원인으로 재산의 형태와 질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영향을 미침-여러 종류의 손인을 담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임
- 종류
 - 화재보험, 간접손실보험, 해상보험, 도난보험, 권원보험, 신용보험 등

제2절 화재보험

1. 개요

- 17세기 중반 런던의 대규모 화재 이후로 화재보험이 본격적 발전
- 그 후 미국 대도시에 대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미국의 손해 보험이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발전
- 화재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표적 재산 보험

2. 화재보험 계약 분석

[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재보험계약의 주요내용]

(1) 담보 손인(perils covered)

- 열거담보(named perils)
 - 열거된 손인에 의한 손실만 담보한다.
- 보험합의문(insuring agreement)
 - 화재에 의한 손실 및 보상, 번개에 의한 손실, 이전에 의한 손실과 같은 직접손실만 보상
 - 근인주의 입각에 입각한 적대적 화재에 의한 직접적 손실을 보상

- 화재의 정의
 - 불꽃, 화염, 자연발화에 의한 통제 불가능한 적대적인 화재
 - 화재: 눈에 보일 만큼의 불꽃이나 화염을 만들기에 충분한 빠른 산화
 - 자연발화: 외부매개체의 작용 없이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하여 불꽃을 만들고 빛을 내며 타는 것
 - 적대적 화재: 통제 불가능한 화재(담보대상)
- 확장담보특약
 - 열거 손인 이외의 추가 손인을 패키지로 담보하거나 분리하여 담보
 - 태풍, 우박, 폭동, 비행기, 자동차, 연기 등

(2) 보상한도 및 보상방법

① 보상한도

- 실손보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가입금액이나 실질적 경제가치를 초과하는 보상 불가
- 정액보험이나 기평가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.

② 보상방법

- 손실에 대하여 실제현금가치(actual cash value) 또는 시장가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(실제현금가치=대체비용-감가상각비)
 - 수리비용과 대체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 - 수리비용과 대체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- 손상된 재산을 보험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.

(3) 기타 주요 계약내용

① 보험계약기간

- 일반적으로 1년~3년 (개시 및 종료는 오전12:01 기준)

② 담보 재산과 장소

- 명기된 재산과 장소에 대해서만 담보

③ 면책 재산

- 명기된 장부, 증서, 청구서, 화폐, 유가증권 등

④ 면책 손인

- 전쟁, 반란, 혁명, 소요 등에 의한 손실 및 계약자 의무해태, 고의에 의한 손실

⑤ 보험담보의 중단

- 담보리스크에 현저한 변화 발생시

⑥ 손인 및 조건의 추가

- 서면으로 작성, 기본증권에 첨부

⑦ 계약의 해약

- 피보험자 요청시, 보험자가 해약 시 5일전 서면 통보
- 납입보험료에서 단기요율을 적용할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

3. 한국의 화재보험 약관

1) 화재보험

(1) 보상하는 손실

- ① 화재에 따른 손실
-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실
- ③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①, ②의 손실과 손실액의 10% 한도로 잔존물 처리비용

(2) 보상하지 않는 손실

- ①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실
- ②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실
- ③ 화재 발생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실
- ④ 보험목적물의 발효, 자연발열, 자연발화로 생긴 손실
- 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실

(3) 보험자의 책임 개시 및 종료

- 보험기간의 첫날 16:00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16:00 종료

(4) 보험목적물의 범위

- 건물 및 동산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범위 제한

(5) 손실방지의 의무

-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실경감 노력
- 게을리한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경감가능금액을 공제

(6) 지급보험금의 계산-80% 공동보험 조항 적용

- 전부보험: 보험가입금액 $\geq$ 보험가액의 80% 일때
 -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액 전부
- 일부보험: 보험가입금액 $<$ 보험가액의 80% 일때
 - 손실액 $\times$ (가입금액/보험가액의 80%)

(7) 잔여보험 부보금액

- 최초가입금액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

(8) 청구권의 소멸시효 - 2년

2) 주택화재보험

(1) 보험목적의 범위

- ①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독립주택,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, 연립건물, 중층건물 및 아파트로서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
- ② 주택 병용 건물로서 교습소,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수용가재

(2) 보상하는 손실

- ① 화재, 폭발, 파열에 따른 손실
- ② 그에 따른 소방 및 피난 손실

(3) 보상하지 않는 손실

- ① 일반화재보험과 동일
- ② 수도관, 수관, 수압기 등의 파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

3) 주택상공종합보험

(1) 담보손인

- ① 화재 및 번개
- ② 폭발 및 파열
- ③ 항공기 추락 또는 접촉, 물건낙하
- ④ 차량충돌 또는 접촉
- ⑤ 노동쟁의 폭행
- ⑥ 위 사고의 소방 또는 피난조치
- ⑦ 도난손실
- ⑧ 풍수설해

(2) 보상하는 손실

- ① 위의 손실에 대해 보상 단, ⑦⑧은 부수적으로 보상

(3) 피보험목적물

- ① 주택물건과 일반물건, 수용되고 있는 동산
- ② 담보 손인 및 보상하는 손실 범위가 넓음

제3절 간접손실보험

1. 개요

1) 간접손실의 개념

- 화재 또는 기타 손인에 의하여 건물 또는 동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, 그 손실의 결과로 발생하는 다른 손실

2) 간접손실보험의 목적

- 직접손실의 발생에 따른 간접손실을 보상

3) 간접손실보험의 분류

- 시간요소담보
 - 손실의 발생크기가 시간요소와 관계 있는 담보
 - 사업중단보험, 우발적 사업중단보험, 임대 또는 임대가치보험, 추가비용보험 등
- 시간요소와 관계 없는 담보
 - 이익보험, 임차권이익보험, 외상매출금보험 등

2. 사업중단보험

1) 개념

- 대표적 간접손실보험으로서 화재 또는 기타 손인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사업적 손실을 보상

2) 손실의 성격

- 보상하는 소득손실
 - － 사업이 지속되었을 경우 실현되었을 순이익과 고정경비 또는 지출
- 실손보상계약

3) 담보재산의 성격

- 제조리스크
 - － 미래의 생산에 기여하는 재산이 소득 상실을 유발
- 상업리스크
 - － 미래의 판매에 기여하는 재산이 소득 손실을 유발

4) 보상기간

- 사고의 발생부터 손상된 재산이 수리되거나 대체되어 정상적인 작업이 재개된 때까지의 기간

3. 우발적사업중단보험

-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고, 조업하지도 않고, 통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사업이 중단될 때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보험

4. 추가비용보험

- 화재 및 기타 손인에 의하여 건물이나 동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추가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

제4절 해상보험

1. 개요

1) 정의

- 피보험자가 입은 해상손실, 즉 해상사업과 관련해서 생긴 손실을 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보험자가 전보해 주는 계약”

2) 부보의 대상

- 선박, 화물 또는 동산의 손실
- 수입, 여객 및 화물운임, 수수료, 기타 금전적 급부, 대출, 선불에 대한 보증 또는 선비와 관련된 손실
- 해상손인(ocean peril)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실

3) 역할

- 해상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감소
- 예기치 못한 손실 대비
-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신용제도의 원활한 운영

2. 해상보험계약 분석

1) 기본적 담보손인

해상고유의 손인

해상사업 과정에서
해상에서만 발생할 수
있는 손인

침몰(sinking)

좌초(stranding)

충돌(collision)

악천후(heavy
weather)

해상의 손인

해상에서
발생할 수 있는
일반적 손인

화재(fire)

투하(jettison)

선원의 악행
(barratry)

해적(pirates)

방랑자(rovers)

강도(thieves)

전쟁손인

적대적 활동에 의한
손인

군함(men-of-war)

외적(enemies)

습격, 포획
(surprisal, capture)

해상탈취, 나포
(taking at sea
& seizure)

강유, 억지, 억류
(arrest, restraints,
detainment)

2) 해상손실의 형태

(1) 손실의 내용에 따른 분류

- 물리적 손실(physical loss)
 - 피보험목적의 직접적인 파괴 또는 멸실이 발생하는 것
- 비용손실(expense loss)
 - 물리적 손실 발생 후 손실방지/처리 등에 지출되는 비용
- 배상책임손실(liability loss)
 - 피보험자 해상사업도중 제3자에게 입힌 물적/인적 손실

(2) 손실의 성격에 따른 분류

- 전손(全損; total loss)
 - 실제전손(actual total loss)
 - 추정전손(constructive total loss)
- 분손(分損; partial loss)
 - 단독해손(particular average)
 - 공동해손(general average)

3. 해상보험의 종류

1) 선박보험(hull insurance)

- 선박의 선체와 기관을 담보대상으로 하여 직접손실과 배상책임손실을 보상하는 보험
- 선박보험의 계약형태
 - 운항보험증권
 - 항구리스크증권
- 피보험자
 - 선박소유자, 일부소유자, 선박용선자, 선박저당권자 등
- 담보되는 피보험이익
 - 선체 및 기관, 선박보험료, 운임, 경비, 충돌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

2) 적하보험(cargo insurance)

- 해상에서 운송중인 화물이 담보손인에 의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
 - 운송중인 화물에 손실 발생시 1차적 책임은 운송업자이지만 화주 또는 운송업자가 확실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입
 - 피보험이익은 화주(화물매입비용, 운임, 보험료, 기대이익 등)

3) 운임보험(freight insurance)

-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임의 손실을 보상 보험
- 운임손실에 따른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는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짐
 - 선불운임의 경우-안전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이익이 화주에 있음: 화주는 적하보험에 의해 담보됨
 - 후불 운임의 경우: 안전도착을 전제로 할 경우 피보험이익이 선주에게 있음.-별도의 운임보험에 가입해야 운임손실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음.

4) 기대이익보험(expected profit insurance)

- 성격상 간접손실 또는 결과손실에 대한 보험
- 화물이나 선박의 직접손실로 인한 예상이익, 수수료, 기타 금전적 급부를 상실 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

제 5절 기타 재산보험

1. 기관기계보험(boiler & machinery insurance)

-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각종의 기관 및 기계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보상
 - 사고발생전의 가동상태로 완전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
 - 손실방지 목적에 더 큰 비중, 정기검사 같은 손실방지활동 지원
- 보상하는 손실
 -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,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, 종업원의 취급 부주의, 기술부족, 보일러 급수부족, 물리적 폭발, 파열, 원심력에 의한 파손, 단락 등 전기적 현상, 기타 면책손인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

2. 도난보험(theft insurance)

- 소유 또는 사용중인 각종 재물 또는 동산을 도난당하여 입는 경제적 손실과 도난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손실을 보상
 - 담보범위는 지정된 장소의 재산만 담보

3. 권원보험(title insurance)

-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의 소유권에 대한 이익침해를 보호해주는 보험
-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입한 부동산 소유권의 하자, 소유권판매의 불가능성,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도는 채무부담, 부동산 측량착오, 권리증서의 오기 및 위조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
- 일반보험과 다른 점
 - 증권발급이전에 발생한 소유권 하자에 따른 손실 보상
 - 보험자는 미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리스크 인수
 - 보험료는 증권 발행시 한번 납입
 - 보험기간은 영구히 지속
 - 손실발생시 보험자는 부보금액(부동산구입가격)까지 현금보상

4. 신용보험(credit insurance)

-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신용거래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제도로써 기업의 신용손실 보상
- 신용보험의 효용
 - 판매상품에 대한 신용담보를 보장에 의해 기업들에게 신용확대 기회를 가질 수 있음.
 - 피보험기업의 금융기관 및 거래처 관계에서 신용상승
 -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시 보험증권에 의거 보수적 지침을 사용할 수 있음
 - 불량채무손실 감소 및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효율적 회수 및 구조서비스가 가능
- 보상한도 제한제도
 -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평균 손실(=자기부담금)은 부보대상에서 제외

제6절 보험료 산정

1. 개요

- 1) 보험료 산정 - 보험상품의 가격결정을 의미
- 2) 보험료(premium)
 - 보험단위가격과 보험가입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(=보험요율×보험가입금액)
- 3) 보험요율(premium rate)
 - 보험상품 가격을 보험단위에 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보험가격의 상대적 수준(=보험료/보험가입금액)

보험료의 구성과 세부내용

보험료 구성	예 측	사후확정	
	순보험료	지급보험금(손해사정비 포함)	
	부가보험료 (사업경비+이익)	사업비	손해율(보험금/보험료)
		영업비 일반관리비	사업비율(사업비/보험료)
		이익	이익율(이익/보험료)

2. 보험요율 산정의 목적

1) 경영상의 목적

-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요율구조 구축
- 손실통제 장려
- 비정상적 손실에 대비

2) 규제상의 목적

- 보험요율의 충분성
- 보험요율의 비과도성
- 보험요율의 공평한 차별성

3. 보험요율 산정방식

1) 등급요율(class rating)

① 순보험료 방식

$$\begin{aligned}\text{순보험료} &= \text{손실빈도} \times (\text{평균})\text{손실규모} \\ &= (\text{사고건수}/\text{계약건수}) \times (\text{보험금}/\text{사고건수}) \\ &= \text{보험금}/\text{계약건수}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\text{영업보험료} &= \text{순보험료} + \text{부가보험료} \\ &= \text{순보험료} + (\text{영업보험료} \times \text{사업비율})\end{aligned}$$

② 손해율 방식

$$R = (A - E) / E$$

(R: 조정요율, A: 실제손해율, E: 예정손해율)

2) 개별 요율(individual rating)

① 판단요율 방식

② 경험요율 방식

③ 소급요율 방식

④ 예정표요율 방식